

변호사와 공익활동

- 제1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116
- 제2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성질 ◆ 117
- 제3장 변호사 공익활동의 내용과 종류 ◆ 117
- 제4장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의 범위 ◆ 120
- 제5장 공익활동의무의 분량·이행방법·비용지원 ◆ 121
 - 제6장 공익활동 기금 ◆ 123
 - 제7장 공익활동의 보고 ◆ 123
- 제8장 공익활동의 자율적 관리 및 제재 ◆ 124

제1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2000년 1월 28일 개정 변호사법 제27조에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동 법조항은

-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2000년 6월 26일 변호사의 공익활동 범위와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2003년 2월 10일 개정)한데 이어 2000년 7월 19일 회칙을 개정해서 회원인 변호사의 공익활동참가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 2월 4일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도록 한 위임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도 그에 관한 규정·지침 등을 제정하여, 회원 변호사 개개인이 공익활동 또는 지정처리업무의 종류·내용, 분량, 활동방법 등에 관한 세칙을 정하고 있다.

제2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성질

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그것이 변호사에게 그의 직무집행과는 별도로 공익활동을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 직무 자체의 내재적 특성인 공공성과는 다르다. 이 점에서 위 개정변호사법의 변호사에 대한 공익활동 의무부과규정 신설이 변호사 직무 공공성의 외연적(外延的) 확대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위 개정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그의 직무수행과는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 점에서 그 의무를 재야 법조단체 및 구성원인 변호사 개개인에게 함께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를 따로 정한 바 없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의무부과 규정이 선언적·비강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공익활동은 임의적·자발(自發)적 동기와 의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부터 진정한 공익성 사회성의 평가도 가능하다. 이 점에서 법률로써 변호사에게 본연의 직무수행과는 따로 변호사단체가 지정한 업무를 공익활동으로써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의 타당성 내지 적정성에 관한 법리적 의문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야 법조지역 전체가 법률로 공익활동을 할 의무를 특별히 부과받을 정도로 신망(信望)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자성(自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장 변호사 공익활동의 내용과 종류

변호사가 수행·처리할 변호사법 소정의 공익활동은

- ① 공익활동에의 종사(비지정 공익활동)
 - ②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의 처리(지정 공익활동)
- 등 2가지이다.

위 비지정 공익활동의 종류·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전적 개념으로는 공익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재물 또는 노역의 무상(無償)적 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법에 의하여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위 비지정 공익활동을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는 회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의 권리·자유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부조
- 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및 국선대리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법률부조
- 공공기관의 공익활동 또는 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공익단체가 행하는 공익활동·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그 권리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부조 활동

- 공익단체의 임원·직원·상근자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국가·사회를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변호사회가 행하는 법률상담·법률부조·재난구호·사회복지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종사·실행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법령의 제·개정, 제도의 설정·정비를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
 - 기타 회장이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 공익활동심사 지침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등을 비지정 공익활동인 것으로 열거한다.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공익활동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는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무상적 활동
- 이라고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는

- 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및 국선대리
 - 변호사회의 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행하는 변호사회 근무활동 및 업무수행
 - 공공기관·공익단체·변호사회로부터 위촉받은 업무의 수행
-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방변호사회 등 재야 법조단체도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익활동 영역과 활동체계의 개발·확대를 위한 실천적 기반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제4장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 변호사 이외의 모든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은 이 공익활동 의무부담 변호사를 결정하는 기준인 법조경력 기간을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기간을 합산하되 법조경력 기산일은 변호사는 최초 개업일, 판사, 검사, 군법무관은 임관일을 기준하여 계산하고, 변호사의 휴업기간은 법조경력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타 직역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에는 변호사의 직무를 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임의적 조합형의 합동법률사무소 등 독립한 법인격이 없는 변호사의 공동직무 수행조직은 거기에 속한 개인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따로 독립된 공익활동의무가 없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개인회원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종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장 공익활동의무의 분량·이행방법·비용지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위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변호사 개개인이 스스로 직접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의 시간적 분량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종사할 시간을 매년 누계 2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공익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비지정 공익활동의 분량과 지정 공익활동의 분량을 합산하여 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은

- ① 회원의 법조경력 2년이 되는 해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은 ‘1일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365일)×1년] 중 법조경력 2년이 되는 날부터의 잔여 일수’로 산정하되, 분(分) 미만은 절상하고,
- ② 회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은 ‘1일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365일)×1년] 중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의 일수’로 산정하되, 분 미만은 절상하며,
- ③ 휴업 회원이 개업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1일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365일)×1년] 중 개업일 이후부터의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산정하되, 분 미만은 절상하고,
- ④ 개업회원이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일까지 상응한 시간의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고,

- ⑤ 회원의 폐업, 소속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④항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위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의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아래와 같은 대체적(代替的) 또는 공동적 수행방법도 정하고 있다.

-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활동의 직접수행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회원은 미수행 시간을 1시간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방법
- ②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 변호사인 개인회원으로서는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한 전원을 위하여 시행한 공익활동시간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동 개인회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법 (이 경우의 법무법인의 공익활동시간은 당해 법무법인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지정 변호사가 종사한 공익활동시간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동 개인회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법(이 경우에 지정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당해 지정 변호사에게 배분되는 시간에 한하여 동 지정 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위에 말한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익활동을 대신 수행할 것을 지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는 법조경력 2년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개인변호사라도 무방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 ‘공익활동비용등지원에관한지침’을 제정해서

- ①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익적 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회원 중에서 수행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 ② 위 대상 공익활동 및 수행변호사의 선정과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 ③ 회원의 개별적인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 ④ 위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그 지원 여부, 지원내용 등을 정한다는 것
- ⑤ 사안의 성질상 상당한 경우 법률원조사협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
- ⑥ 이상의 비용지원은 각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인권옹호비 예산항목액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

등을 정하여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제6장 공익활동 기금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공익활동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할 것과 회원의 공익활동 미수행시간에 대한 대체납부금을 동 특별기금에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공익활동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공익활동기금이라는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동 변호사회의 자금을 출연하는 외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익활동 대체납부금을 그 기금에 적립하여 공익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제7장 공익활동의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의무가 있는 변호사

는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 활동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소속 회원의 공익활동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회원으로 하여금 매 연도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다음해 1월 말까지 동 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각 지방변호사회별 공익활동 결과보고를 종합하여 이를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장 공익활동의 자율적 관리 및 제재

공익활동의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는 그에 관한 규정·지침을 만들어 자율적인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익활동 범위의 결정, 공익활동 해당 여부의 심사인정, 공익활동시간의 조정, 공익활동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건의 등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전반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심사·결정·건의하는 기능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해서

- 공익활동의무가 있는 회원 변호사로부터 보고받은 공익활동 결과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빙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익활동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고,
- 위의 경우에 공익활동심사위원회는 당해 개인회원에게 공익활동 보고 내용에 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개인회원은 지체없이 이

에 응하여야 하고,

- 공익활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공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 공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공익활동시간에 미달한 때, 공익활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회장이 당해 회원에게 그 이행 또는 보완을 최고하도록 하며,
- 위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지침’은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익활동의무 미이행 회원에 대한 위의 최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공익활동이행 등의 최고처분을 유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이 동 법률 및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칙·회규(會規) 등 위반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